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찬성자 35명)

나. 의안번호 : 제 846 호

다. 발의일자 : 2023. 5. 30

라. 회부일자 : 2023. 6. 5

2. 제안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내 화재위험성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관계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다.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 라.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마.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안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소방시설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화재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표 1] 조례안 주요내용

조 문 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관계인”의 용어 정의 - “소방설비등”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별표 1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소방설비등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소방용수시설</td> <td>소화전, 비상소화장치</td> </tr> <tr> <td>소방시설</td> <td>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td> </tr> <tr> <td>안전시설</td> <td>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td> </tr> </tbody> </table>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구 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안전시설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
구 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안전시설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다만, 제2호는 심사 필요) 1.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제5조(지원심사)	·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								
제6조(지원방법)	·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 규정 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 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제7조(환수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								
부칙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서울시내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¹⁾에 따라 시장에게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시장지역 6개소, 공장밀집지역 2개소, 목조밀집지역 11개소, 창고밀집지역 1개소 등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표2] 참조)

[표 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 20개 지역 (총 2,822동, 940,421.04㎡)

(단위: 지구)

대상	서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마포	송파
		20	9	3	1	3	1	1	1	1
시장지역		6	2	1	1	1	-	-	1	-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6	1	-	2	1	1	-	-
창고밀집지역		1	-	-	-	-	-	-	-	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 ⑥ 생략

- 참고로, 최근 5년간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총 68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표 3] 화재발생 현황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68	3	0	3	4,198,799
2023.1.1.~ 4.30.	9	0	0	0	1,084,797
2022년	24	0	0	0	186,250
2021년	8	1	0	1	870,034
2020년	13	1	0	1	2,008,316
2019년	14	1	0	1	49,402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현황

-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화재예방법」 제19조 제3항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10개 시·도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조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 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소방설비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종류는 조금씩 상이함.

[표 4]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시행일자	담당부서
1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2.	재난예방과
2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예방안전과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2023. 2. 24.	예방안전과
4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7.	재난예방담당관
5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1	예방안전과
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대응예방과
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9.	방호예방과
8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8.	대응예방과
9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예방안전과
10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1.	예방안전과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관계인”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예방법」 제18조제1항3)에 따라 시장에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게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소방설비등”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4)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그 밖의 누전 및 가스차단기 등의 안전시설을 안 별표1에 그 해당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관계인”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 정의하고 있음.

[표 5] <별표 1>의 소방설비등

구 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안전시설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 ⑥ 생략

4)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생략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하려는 것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다.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범위는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 이는 무분별한 설치요청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정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여겨짐.

라. 지원심사 및 방법 등 (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건축물관리 대장 및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등 관계인의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직접 설치하고 시장이 설치 확인한 후 비용 지급 방법과 ‘시장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설치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설치 여건과 환경이 상이한 만큼 신청인 입장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신청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등의 규격품 사용여부와 설치 위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살펴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설치 확인을 위한 매뉴얼을 별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환수조치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조치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환수조치는 부정한 수급자에 대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행정 조치로 사전에 환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단계부터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 등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적법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바. 경과조치 (부칙안)

- 부칙안에서는, 조례의 적용과 관련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원신청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이라 이해됨.